

무배당 동부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

보험약관

(개인형)

무배당 동부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개인형)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기초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퇴직연금사업자인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기초하여 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자로 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라 합니다)는 관련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운용지시
2. 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지시
3.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4. 이전에 따른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5. 기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 등의 지급
6. 기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7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8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19조(금리연동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22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청구권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

항에 따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제11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0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에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일시부담금은 계약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이 제도로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일시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개인부담금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13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2영업일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6조 (소멸시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7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 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제 19조 및 제20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9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 ① 금리연동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20조 (금리연동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타 자산관리기관으로의 이전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 21조 ~ 제23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1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부담금 납입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 보험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 2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만기시점의 회사에서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나이(이하 “급여발생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4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급여발생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 다만,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급여발생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22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①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23조 (이율보증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별표1참고)이 적용된 금액이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 24조 ~ 제33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4조 (실적배당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5영업일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타 자산관리기관으로의 이전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25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28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27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제‘가’항 또는 제‘나’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7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안정채권형 :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NAV)의 90%이상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2. Active혼합형40 :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3. 배당가치주혼합형40 : 국내 상장주식(고배당이 예상되며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된 저PER, 저PBR 종목 중심), ETF,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4. 인덱스혼합형40 : 국내 상장주식(KOSPI200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 ETF,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8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7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3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29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특별 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28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이 변경되는 경우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2년 이율보증형 MVA]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 \right)^{n+\frac{m}{12}}, 0 \right]$$

※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3,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0.5\%} \right)^{n+\frac{m}{12}}, 0 \right]$$

※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이율

n : 남은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남은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i_h : 남은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이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i_{h-1} :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 변경일에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 변경일의 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이율보증기간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 i_{h+1} "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 변경일에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 변경일의 기준이율

n' : i_{h-1} 보증기간부터 i_{h+1} 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

m' : i_{h-1} 보증기간부터 남은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3. 해지(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 포함) 또는 보험세목 변경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기준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받아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